

대구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119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A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24. 1.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4. 1. 19. 접수 제3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0. 23. B와 사이에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나. 2023. 11. 24. B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4. 3. 4. B를 대신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9,424,030원을 변제하였다.

다. B은 2024. 1. 19.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D에 대한 신용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맺어진 상태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보증사고의 발생 시기(2023. 11. 24.)와 구상금채권 성립 시기(2024. 3. 4.), B의 자산 및 채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등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B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6. 7. 13.부터 2016. 8. 20.까지 B의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70,79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E가 아닌 B에게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고가 B에게 대여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 등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세훈

별지